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20 선고 2023나7595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등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20 선고 2023나75959 판결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. 6. 13 선고 2022가단248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구

변론종결 2024. 9. 4.

판결선고 2024. 11. 20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. 6. 13. 선고 2022가단2488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
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
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
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류창성, 판사 염혜수, 판사 홍미옥